

◆ 2022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기본서 정오표

■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오탈자 등은 제외

변경 전	변경 후										
Page 18. 표안 아염소산-염-류 ■ HClO ₂ → M ClO ₂	아염소산-염-류 ■ HClO ₂ → M ClO ₂										
Page 20. 표안 ■ 알칼리-토-금속의 과산화물 ☞ 용기 주의사항·충격주의, 가연물접촉주의	■ 알칼리-토-금속의 과산화물 ☞ 용기 주의사항 : 화기 ·충격주의, 가연물접촉주의										
Page 20. 표안 ◎ 유기-과산화-물 ☆ Radical(작용기) : 화학반응에서 ~~~~~	◎ 유기-과산화-물 ☆ 작용기 : 화학반응에서 ~~~~~										
Page 32. 표안 / 36. 표안 o(오르 토)-자일렌	o(오르 소)-자일렌										
❖ 실무서별 표기 상이 : 오르토 / 오르소 / 오쏘 →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적용											
Page 35. 표안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d>수용해도</td> <td>자료없음</td> <td>자료없음</td> <td>자료없음 (※실무:수용성)</td> <td>자료없음 (※실무:수용성)</td> </tr> </table>	수용해도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 (※실무:수용성)	자료없음 (※실무:수용성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d>수용해도</td> <td>자료없음 (※실무:비수용성)</td> <td>자료없음 (※실무:비수용성)</td> <td>수용성</td> <td>수용성</td> </tr> </table>	수용해도	자료없음 (※실무:비수용성)	자료없음 (※실무:비수용성)	수용성	수용성
수용해도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 (※실무:수용성)	자료없음 (※실무:수용성)							
수용해도	자료없음 (※실무:비수용성)	자료없음 (※실무:비수용성)	수용성	수용성							
Page 36. 표안 페놀(벤젠올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d>고체: 비위험물 (특수가연물)</td> </tr> <tr> <td>액체: 제3석유류</td> </tr> <tr> <td>79.4 °C</td> </tr> </table>	고체: 비위험물 (특수가연물)	액체: 제3석유류	79.4 °C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d>고체: 비위험물 (특수가연물)</td> </tr> <tr> <td>수용액: 위험물조건 1. 20°C 액상 2. 페놀 40wt% 초과 3. 인화점(%별상이)</td> </tr> <tr> <td>고체: 79.4 °C (녹는점 40.9°C)</td> </tr> </table>	고체: 비위험물 (특수가연물)	수용액: 위험물조건 1. 20°C 액상 2. 페놀 40wt% 초과 3. 인화점 (%별상이)	고체: 79.4 °C (녹는점 40.9°C)				
고체: 비위험물 (특수가연물)											
액체: 제3석유류											
79.4 °C											
고체: 비위험물 (특수가연물)											
수용액: 위험물조건 1. 20°C 액상 2. 페놀 40wt% 초과 3. 인화점 (%별상이)											
고체: 79.4 °C (녹는점 40.9°C)											
Page 36. 표안 ◎ 제4류 중 제1석유류 ■ 벤젠 [C ₆ H ₆] C	◎ 제4류 중 제1석유류 ■ 벤젠 [C ₆ H ₆]										
Page 40. 1번째 표안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d>1차·2차·3차 알코올</td> <td>◎ 탄소에 붙어 ~~~~~</td> </tr> </table>	1차·2차·3차 알코올	◎ 탄소에 붙어 ~~~~~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d>1차·2차·3차 알코올</td> <td>◎ 하이드록시기(OH)가 결합된 탄소에 붙어</td> </tr> </table>	1차·2차·3차 알코올	◎ 하이드록시기(OH)가 결합된 탄소에 붙어						
1차·2차·3차 알코올	◎ 탄소에 붙어 ~~~~~										
1차·2차·3차 알코올	◎ 하이드록시기(OH)가 결합된 탄소에 붙어										
Page 89. 2번째 표안 제목 ◆ 옥내저장소의 용기 의 온도유지 (중요기준)	◆ 옥내저장소의 용기 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유지 (중요기준)										
Page 128. 1번째 표안 변경허가 有 ◎ 주유취급소의 탱크	◎ 주유취급소의 탱크· 부지										
Page 133. 3. 처리결과와 통보 대상이 되는 업무 ⑨ 각 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	3. 처리결과와 통보 대상이 되는 업무 ⑨ 사 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										
Page 459. 3번째 표안 제목 ◆ 밸브 없는 통기관	◆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										

Page 681. 표안 노란색 음영 부분 수정

◆ 소화난이도-등급의 구분 (♣규칙 [별표 17]) 《★18년 장》《★13년 장》			
구분	소화난이도-등급 I	소화난이도-등급 II	소화난이도-등급 III
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《★13년 장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면적 1,000㎡ 이상 ■ 지정수량 100배 이상 ❖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고인화점 +100℃ 미만 취급 ☞ 화약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면적 600㎡ 이상 ■ 지정수량 10배 이상 ❖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고인화점 +100℃ 미만 취급 ☞ 화약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화약류 ■ 등급 I · II의 외의 것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높이 6m 이상 ☞ <u>지반면</u> ~ 취급설비 ❖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고인화점 +100℃ 미만 취급 	X	

Page 683. 표안 녹색 음영 부분 삽입

◆ 소화난이도-등급의 구분 (♣규칙 [별표 17]) 《★18년 장》《★13년 장》			
구분	소화난이도-등급 I	소화난이도-등급 II	소화난이도-등급 III
옥외탱크 저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액표면적 40㎡ 이상 ❖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6류 ☞ 고인화점 +100℃ 미만 취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등급 I의 외의 것 ❖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6류 ☞ 고인화점 +100℃ 미만 취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6류 ■ 고인화점 +100℃ 미만 취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높이 6m 이상 ☞ <u>지반면</u> ~ 탱크 <u>옆판의 상단</u> ❖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6류 ☞ 고인화점 +100℃ 미만 취급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지중-탱크</u> 또는 <u>해상-탱크</u> ☞ 지정수량 100배 이상 ❖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제6류 ☞ 고인화점 +100℃ 미만 취급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고체-위험물</u> ☞ 지정수량 100배 이상 		

◆ 소화난이도-등급의 구분 (♣규칙 [별표 17]) 《★18년 장》《★13년 장》

구분	소화난이도-등급 I	소화난이도-등급 II	소화난이도-등급 III
옥내탱크 저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액표면적 40㎡ 이상 ❖ 제외 ↳ 제6류 ↳ 고인화점 ↳ +100℃ 미만 취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등급 I의 외의 것 ❖ 제외 ↳ 제6류 ↳ 고인화점 ↳ +100℃ 미만 취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6류 ■ 고인화점 ↳ +100℃ 미만 취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높이 6m 이상 ↳ 바닥면 ~ 탱크 옆판의 상단 ❖ 제외 ↳ 제6류 ↳ 고인화점 ↳ +100℃ 미만 취급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(=다층) ↳ 인화점 38℃ 이상 70℃ 미만 ↳ 지정수량의 5배 이상 ❖ 제외 ↳ 내화구조로 ↳ 개구부 없이 구획 		

◆ 소화난이도-등급의 구분 (♣규칙 [별표 17]) 《★18년 장》《★13년 장》

구분	소화난이도-등급 I	소화난이도-등급 II	소화난이도-등급 III
옥외 저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덩어리 상태의 유황 ↳ 경계표시 내부면적 100㎡ 이상 (2 이상 → 합한 면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덩어리 상태의 유황 ↳ 경계표시 내부면적 5㎡ 이상 100㎡ 미만 (2 이상 → 합한 면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덩어리 상태의 유황 ↳ 경계표시 내부면적 5㎡ 미만 (2 이상 → 합한 면적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정수량 100배 이상 ↳ 인화성고체 ↳ 제1석유류 ↳ 알코올류 (★ 살수설비대상 → 적당온도유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정수량 10배 이상 100배 미만 ↳ 인화성고체 ↳ 제1석유류 ↳ 알코올류 (★ 살수설비대상 → 적당온도유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등급 I · II의 외의 것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정수량 100배 이상 ↳ 상기 이외의 것 ❖ 제외 ↳ 덩어리 상태의 유황 ↳ 고인화점 		
암반탱크 저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액표면적 40㎡ 이상 ❖ 제외 ↳ 제6류 ↳ 고인화점 ↳ +100℃ 미만 취급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체-위험물만을 저장 ↳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		